

서천군체육회 임원회비 규정

제정 2021. 10. 13.

제1조 (목적) 본 규정은 서천군체육회(이하 “본회“라 한다)의 사업목적 달성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회장, 부회장 출연금 납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금액) 회비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.

	연 회 비		비 고
임원	회 장	20,000,000원	선출직
	부 회 장	2,000,000원	임명직

제3조 (납부기한) ① 본회 회장, 부회장 회비는 매년 4월말일 까지 납부한다.

② 납부방법은 본회가 정하는 별도의 계좌로 납부한다.

제4조 (집행) ① 본회의 일상경비의 예산집행은 서천군체육회 사무 전결규정을 준수하여 투명하게 적법절차에 따라 집행하고 회계질서를 확립 한다.

② 감사는 감사의 필요한 회계자료를 사무국에 요구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.

③ 회비는 사업계획에 의거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로 사용하며 집행한다.

1. 일반운영비, 업무추진비, 여비, 직원 복리후생비 등

④ 기타 회장이 필요로 하다고 판단 시 추가 집행 할 수 있다.

부 칙 (2021.10.13.)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서천군체육회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경과조치) 이 규정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본회 임원회비규정을 시행 한다.